

#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160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7년 10월 16일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
## 1. 제안이유

적정규모학교 설립 및 혁신적인 교육공간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부로부터 한시적으로 지방서기관 정원책정이 승인되어,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한시정원과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한시기구인 교육공간기획 전담부서의 장인 지방서기관 1명을 정원의 총수 및 일반직공무원 정원으로 증원 책정함(안 제2조 및 별표 3)
- 나.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을 한시기구의 존속기간과 동일하게 2년으로 정함(안 부칙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[별첨 3]
  - 1)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3조
  - 2)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의2, 제18조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[별첨 2]
- 다. 기 타
  - 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[별첨 1]
  - 2) 입법예고(2017. 9. 16. ~ 10. 5.) 결과 : 의견 없음
  - 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  - 4)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7,112명” 을 “7,113명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6,647명” 을 “6,648명” 으로 한다.

별표 3은 별지와 같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정원) 제2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[별표 3]

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

구 분	계	시의회 사무처	본청 (직속기관 포함)	교육 지원청	공립의 각급학교
<b>총 계</b>	<b>7,113</b>				
<b>정무직 계</b>	<b>1</b>				
교육감	1		1		
<b>일반직 계</b>	<b>6,650</b>				
2·3급	1		1		
3급	9		9		
3·4급	3		3		
4급	39		28	11	
4·5급	6		6		
5급 이하 소계	6,569				
전문경력관 소계	9				
연구사 소계	14				
<b>별정직 계</b>	<b>2</b>				
5급상당 이하 소계	2				
<b>특정직 계</b>	<b>460</b>				
4급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50		28	22	
5급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410				

<비고> 제2조에 따른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본청의 지방서기관 1명으로 한다.

【별첨 1】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서울특별시교육감 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 소속 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7,112명</u>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본청 · 교육지원청 ·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(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 <u>6,647명</u></p> <p>3. (생략)</p> <p>[별표3]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----- <u>7,113명</u>----- ----- 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</p> <p><u>6,648명</u>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[별표3]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계</th> <th>시의회 사무처</th> <th>본청</th> <th>교육 지원청</th> <th>공립의 각급 학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총 계</td> <td><u>7,112</u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정무직 계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교육감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 계</td> <td><u>6,649</u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2·3급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3급</td> <td>9</td> <td></td> <td>9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3·4급</td> <td>3</td> <td></td> <td>3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급</td> <td><u>38</u></td> <td></td> <td><u>27</u></td> <td>11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·5급</td> <td>6</td> <td></td> <td>6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계	시의회 사무처	본청	교육 지원청	공립의 각급 학교	총 계	<u>7,112</u>					정무직 계	1					교육감	1		1			일반직 계	<u>6,649</u>					2·3급	1		1			3급	9		9			3·4급	3		3			4급	<u>38</u>		<u>27</u>	11		4·5급	6		6		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계</th> <th>시의회 사무처</th> <th>본청</th> <th>교육 지원청</th> <th>공립의 각급 학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총 계</td> <td><u>7,113</u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정무직 계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교육감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 계</td> <td><u>6,650</u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2·3급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3급</td> <td>9</td> <td></td> <td>9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3·4급</td> <td>3</td> <td></td> <td>3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급</td> <td><u>39</u></td> <td></td> <td><u>28</u></td> <td>11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·5급</td> <td>6</td> <td></td> <td>6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계	시의회 사무처	본청	교육 지원청	공립의 각급 학교	총 계	<u>7,113</u>					정무직 계	1					교육감	1		1			일반직 계	<u>6,650</u>					2·3급	1		1			3급	9		9			3·4급	3		3			4급	<u>39</u>		<u>28</u>	11		4·5급	6		6		
구 분	계	시의회 사무처	본청	교육 지원청	공립의 각급 학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 계	<u>7,112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무직 계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교육감	1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계	<u>6,649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·3급	1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9		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·4급	3		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<u>38</u>		<u>27</u>	1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·5급	6		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계	시의회 사무처	본청	교육 지원청	공립의 각급 학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 계	<u>7,113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무직 계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교육감	1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계	<u>6,650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·3급	1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9		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·4급	3		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<u>39</u>		<u>28</u>	1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·5급	6		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현 행						개 정 안					
구 분	계	시의회 사무처	본청	교육 지원청	공립의 각급 학교	구 분	계	시의회 사무처	본청	교육 지원청	공립의 각급 학교
5급 이하 소계	6,569					5급 이하 소계	6,569				
전문경력관 소계	9					전문경력관 소계	9				
연구사 소계	14					연구사 소계	14				
별정직 계	2					별정직 계	2				
5급상당 이하 소계	2					5급상당 이하 소계	2				
특정직 계	460					특정직 계	460				
4급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50		28	22		4급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50		28	22	
5급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 교육연구사	410					5급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 교육연구사	410				
<u>&lt;신 설&gt;</u>						<u>&lt;비고&gt; 제2조에 따른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본청의 지방서기관 1명으로 한다.</u>					

**【별첨 2】**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 관련)

**1. 비용발생 요인**

지방서기관 1명 증원으로 인건비 발생

**2. 미첨부 근거 규정**

「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

**3. 미첨부 사유**

이 조례안은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한시정원(지방서기관)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인건비가 발생하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임

**4. 작성자**

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주무관 황혜은(02-399-9357)

## 【별첨 3】

### 관계법령

#### ■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

제33조(공무원의 배치) ① 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시·도의 교육비 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되, 그 정원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
② 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1항 및 「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」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.

#### 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15조의2(정원 책정의 승인) ① 교육감은 일반직 4급 이상의 정원을 책정하려는 경우(정원 증가가 없는 경우 및 직렬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)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교육감은 정원 책정의 적정성 및 해당 직위의 직무 분석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5.8.>

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될 수 있는 교육전문직원(「교육공무원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서 교육감에 소속된 교육전문직원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정원을 책정하려는 경우(정원 증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)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교육감은 정원 책정의 적정성 및 해당 직위의 직무 분석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본청의 과장·담당관 이상
2. 교육지원청의 국장 이상
3. 직속기관의 부서장(일반직 4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보직되는 직위로 한정한다) 이상

- 제18조(한시정원)** ① 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한시정원을 둘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이 끝나는 날에 소멸된다.
- 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(相計)하여 조정할 수 없다.
- ④ 한시정원과 직급별 정원은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**
- 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.
-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-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.